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http://www.namwon.go.kr)

제14호 2017. 4. 7(금)

선 람	기관의 장

##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7-40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1
- 남원시 고시 제2017-41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 8

## 광고

- 남원시 광고 제2017-533호 고평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광고 ----- 9
- 남원시 광고 제2017-54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광고 ----- 11
- 남원시 광고 제2017-565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 13
- 남원시 광고 제2017-568호 도로광고(변경) ----- 20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7 - 40호

##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 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7일  
남 원 시 장

### 1. 남원 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남원 유원지	남원시 노암동, 어현동, 신촌동 일원	1,420,212	-	1,420,212	전북고시 제252호 (86.12.31)	

### 2. 금회변경사항

- 1) 변경내용 : 도예문화촌 ⇒ 예술촌 명칭변경
- 2) 변경사유 : 유원지 조성계획 중 일부 시설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 시행과 유원지의 활성화를 위하고자 함

### 3.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 총괄조서(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 동수	건축 면적	연 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총계	1,420,212	213	90,042.23	205,084.93	-	-	-	-	1,420,212	213	90,042.23	205,084.93	
유희시설	14,123	12	2,825	2,825	-	-	-	-	14,123	12	2,825	2,825	
운동시설	235,981	6	1,272	1,092	-	-	-	-	235,981	6	1,272	1,092	
휴양시설	50,295	16	11,608	48,772	-	-	-	-	50,295	16	11,608	48,772	
특수시설	179,297	71	40,636.48	79,965.18	-	-	-	-	179,297	71	40,636.48	79,965.18	
편의 및 관리시설	134,508	64	14,817.75	36,537.75	-	-	-	-	134,508	64	14,817.75	36,537.75	
조경 및 기타시설	806,008	44	18,883	35,893	-	-	-	-	806,008	44	18,883	35,893	

### ■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b>총 계</b>	<b>1,420,212</b>	<b>213</b>	<b>90,042.23</b>	<b>205,084.93</b>	-	-	-	-	<b>1,420,212</b>	<b>213</b>	<b>90,042.23</b>	<b>205,084.93</b>	
○ 관광지	911,294	195	87,876.75	202,080.75	-	-	-	-	911,294	195	87,876.75	202,080.75	
○ 춘향테마(유)	508,918	18	2,165.48	3,004.18	-	-	-	-	508,918	18	2,165.48	3,004.18	
<b>1. 유희시설</b>	<b>14,123</b>	<b>12</b>	<b>2,825</b>	<b>2,825</b>	-	-	-	-	<b>14,123</b>	<b>12</b>	<b>2,825</b>	<b>2,825</b>	
○ 관광지	14,123	12	2,825	2,825	-	-	-	-	14,123	12	2,825	2,825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가. 어린이놀이시설	14,123	12	2,825	2,825	-	-	-	-	14,123	12	2,825	2,825	
관광지	14,123	12	2,825	2,825	-	-	-	-	14,123	12	2,825	2,825	
춘향테마(유)	-	-	-	-	-	-	-	-	-	-	-	-	
<b>2. 운동시설</b>	<b>235,981</b>	<b>6</b>	<b>1,272</b>	<b>1,092</b>	-	-	-	-	<b>235,981</b>	<b>6</b>	<b>1,272</b>	<b>1,092</b>	
○ 관광지	235,981	6	1,272	1,092	-	-	-	-	235,981	6	1,272	1,092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가. 궁 술 장	10,004	2	988	988	-	-	-	-	10,004	2	988	988	
관광지	10,004	2	988	988	-	-	-	-	10,004	2	988	988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나. 보 트 장	224,277	3	-	-	-	-	-	-	224,277	3	-	-	
관광지	224,277	3	-	-	-	-	-	-	224,277	3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다. 인공암벽장	1,700	1	284	104	-	-	-	-	1,700	1	284	104	
관광지	1,700	1	284	104	-	-	-	-	1,700	1	284	104	
춘향테마(유)	-	-	-	-	-	-	-	-	-	-	-	-	
<b>3. 휴양시설</b>	<b>50,295</b>	<b>16</b>	<b>11,608</b>	<b>48,772</b>	-	-	-	-	<b>50,295</b>	<b>16</b>	<b>11,608</b>	<b>48,772</b>	
○ 관광지	50,295	16	11,608	48,772	-	-	-	-	50,295	16	11,608	48,772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가. 콘도미니엄(1)	11,571	1	2,314	11,571	-	-	-	-	11,571	1	2,314	11,571	
관광지	11,571	1	2,314	11,571	-	-	-	-	11,571	1	2,314	11,571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나. 국민호텔	6,017	1	1,204	6,017	-	-	-	-	6,017	1	1,204	6,017	
관광지	6,017	1	1,204	6,017	-	-	-	-	6,017	1	1,204	6,017	
춘향테마(유)	-	-	-	-	-	-	-	-	-	-	-	-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다. 여 관(1)	11,961	7	3,588	17,942	-	-	-	-	11,961	7	3,588	17,942	
관광지	11,961	7	3,588	17,942	-	-	-	-	11,961	7	3,588	17,942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라. 여 관(2)	5,338	5	2,135	4,270	-	-	-	-	5,338	5	2,135	4,270	
관광지	5,338	5	2,135	4,270	-	-	-	-	5,338	5	2,135	4,270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마. 눈썰매장	7,151	1	715	715	-	-	-	-	7,151	1	715	715	
관광지	7,151	1	715	715	-	-	-	-	7,151	1	715	715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바. 콘도미니엄/호텔	8,257	1	1,652	8,257	-	-	-	-	8,257	1	1,652	8,257	
관광지	8,257	1	1,652	8,257	-	-	-	-	8,257	1	1,652	8,257	
춘향테마(유)	-	-	-	-	-	-	-	-	-	-	-	-	
<b>4. 특수시설</b>	<b>179,297</b>	<b>71</b>	<b>40,636.48</b>	<b>79,965.18</b>	<b>-</b>	<b>-</b>	<b>-</b>	<b>-</b>	<b>179,297</b>	<b>71</b>	<b>40,636.48</b>	<b>79,965.18</b>	
○ 관광지	110,578	55	38,501	76,991	-	-	-	-	110,578	55	38,501	76,991	
○ 춘향테마(유)	68,719	16	2,135.48	2,974.18	-	-	-	-	68,719	16	2,135.48	2,974.18	
가. 전통혼례장	4,558	1	1,595	3,190	-	-	-	-	4,558	1	1,595	3,190	
관광지	4,558	1	1,595	3,190	-	-	-	-	4,558	1	1,595	3,190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나. 국악원	14,304	1	4,291	8,582	-	-	-	-	14,304	1	4,291	8,582	
관광지	14,304	1	4,291	8,582	-	-	-	-	14,304	1	4,291	8,582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다. 춘향문화예술회관	10,604	1	3,181	6,362	-	-	-	-	10,604	1	3,181	6,362	
관광지	10,604	1	3,181	6,362	-	-	-	-	10,604	1	3,181	6,362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라. 야외공연장	1,491	-	-	-	-	-	-	-	1,491	-	-	-	
관광지	1,491	-	-	-	-	-	-	-	1,491	-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마. 춘향촌	65,393	47	26,588	53,175	-	-	-	-	65,393	47	26,588	53,175	
관광지	65,393	47	26,588	53,175	-	-	-	-	65,393	47	26,588	53,175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바. 박물관	8,169	3	1,634	3,258	-	-	-	-	8,169	3	1,634	3,258	
관광지	8,169	3	1,634	3,258	-	-	-	-	8,169	3	1,634	3,258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사. 전통민속놀이 체험장	2,710	1	542	1,084	-	-	-	-	2,710	1	542	1,084	
관광지	2,710	1	542	1,084	-	-	-	-	2,710	1	542	1,084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아. 약수 체험장	3,349	1	670	1,340	-	-	-	-	3,349	1	670	1,340	
관광지	3,349	1	670	1,340	-	-	-	-	3,349	1	670	1,340	
춘향테마(유)	-	-	-	-	-	-	-	-	-	-	-	-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자. 항공우주천문대	5,996	1	680.78	1,468.49	-	-	-	-	5,996	1	680.78	1,468.49	
관광지	-	-	-	-	-	-	-	-	-	-	-	-	
춘향테마(유)	5,996	1	680.78	1,468.49	-	-	-	-	5,996	1	680.78	1,468.49	
차. 소리문화체험마을	40,077	6	1,454.7	1,505.69	-	-	-	-	40,077	6	1,454.7	1,505.69	
관광지	-	-	-	-	-	-	-	-	-	-	-	-	
춘향테마(유)	40,077	6	1,454.7	1,505.69	-	-	-	-	40,077	6	1,454.7	1,505.69	
카. 도예문화촌 → 예술촌	14,827	8	-	-	-	-	-	-	14,827	8	-	-	명칭변경
관광지	-	-	-	-	-	-	-	-	-	-	-	-	
춘향테마(유)	14,827	8	-	-	-	-	-	-	14,827	8	-	-	
타. 미술관	7,819	1	-	-	-	-	-	-	7,819	1	-	-	
관광지	-	-	-	-	-	-	-	-	-	-	-	-	
춘향테마(유)	7,819	1	-	-	-	-	-	-	7,819	1	-	-	
<b>5. 편의 및 관리</b>	<b>134,508</b>	<b>64</b>	<b>14,817.75</b>	<b>36,537.75</b>	<b>-</b>	<b>-</b>	<b>-</b>	<b>-</b>	<b>134,508</b>	<b>64</b>	<b>14,817.75</b>	<b>36,537.75</b>	
○ 관광지	119,838	64	14,817.75	36,537.75	-	-	-	-	119,838	64	14,817.75	36,537.75	
○ 춘향테마(유)	14,670	-	-	-	-	-	-	-	14,670	-	-	-	
가. 상가(1)	7,590	4	3,036	15,180	-	-	-	-	7,590	4	3,036	15,180	
관광지	7,590	4	3,036	15,180	-	-	-	-	7,590	4	3,036	15,180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나. 전문유희음식점	4,423	5	1,548	3,096	-	-	-	-	4,423	5	1,548	3,096	
관광지	4,423	5	1,548	3,096	-	-	-	-	4,423	5	1,548	3,096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다. 기념품판매장	2,818	1	986	1,972	-	-	-	-	2,818	1	986	1,972	
관광지	2,818	1	986	1,972	-	-	-	-	2,818	1	986	1,972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라. 제작판매전시장	6,106	8	2,137	4,274	-	-	-	-	6,106	8	2,137	4,274	
관광지	6,106	8	2,137	4,274	-	-	-	-	6,106	8	2,137	4,274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마. 고유음식점	2,955	6	1,034	2,068	-	-	-	-	2,955	6	1,034	2,068	
관광지	2,955	6	1,034	2,068	-	-	-	-	2,955	6	1,034	2,068	
춘향테마(유)	-	-	-	-	-	-	-	-	-	-	-	-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바. 대중음식점	4,000	6	1,400	2,800	-	-	-	-	4,000	6	1,400	2,800	
관광지	4,000	6	1,400	2,800	-	-	-	-	4,000	6	1,400	2,800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사. 전통찻집	420	1	147	294	-	-	-	-	420	1	147	294	
관광지	420	1	147	294	-	-	-	-	420	1	147	294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아. 저자거리	4,406	11	1,762	3,524	-	-	-	-	4,406	11	1,762	3,524	
관광지	4,406	11	1,762	3,524	-	-	-	-	4,406	11	1,762	3,524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자. 관리사무소	1,740	2	383	505	-	-	-	-	1,740	2	383	505	
관광지	1,740	2	383	505	-	-	-	-	1,740	2	383	505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차. 매 점	343	7	137	137	-	-	-	-	343	7	137	137	
관광지	343	7	137	137	-	-	-	-	343	7	137	137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카. 화장실	1,849	6	510	510	-	-	-	-	1,849	6	510	510	
관광지	1,849	6	510	510	-	-	-	-	1,849	6	510	510	
춘향테마(유)	-	-	-	-	-	-	-	-	-	-	-	-	
타. 광 장	13,723	4	1,517.75	1,517.75	-	-	-	-	13,723	4	1,517.75	1,517.75	
관광지	13,723	4	1,517.75	1,517.75	-	-	-	-	13,723	4	1,517.75	1,517.75	
춘향테마(유)	-	-	-	-	-	-	-	-	-	-	-	-	
파. 주차장	15,317	1	-	-	-	-	-	-	15,317	1	-	-	
관광지	15,317	1	-	-	-	-	-	-	15,317	1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하. 전망대	629	1	220	660	-	-	-	-	629	1	220	660	
관광지	629	1	220	660	-	-	-	-	629	1	220	660	
춘향테마(유)	-	-	-	-	-	-	-	-	-	-	-	-	
가. 도 로	68,189	-	-	-	-	-	-	-	68,189	-	-	-	
관광지	53,519	-	-	-	-	-	-	-	53,519	-	-	-	
춘향테마(유)	14,670	-	-	-	-	-	-	-	14,670	-	-	-	
나 .버스정차대	-	1	-	-	-	-	-	-	-	1	-	-	
관광지	-	1	-	-	-	-	-	-	-	1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6. 조정 및 기타	806,008	44	18,883	35,893	-	-	-	-	806,008	44	18,883	35,893	
○ 관광지	380,479	42	18,853	35,863	-	-	-	-	380,479	42	18,853	35,863	
○ 춘향테마(유)	425,529	2	30	30	-	-	-	-	425,529	2	30	30	
가. 피크닉장	5,301	-	-	-	-	-	-	-	5,301	-	-	-	
○ 관광지	5,301	-	-	-	-	-	-	-	5,301	-	-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나. 일 주 문	-	4	58	58	-	-	-	-	-	4	58	58	
○ 관광지	-	4	58	58	-	-	-	-	-	4	58	58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다. 정 자	-	3	-	-	-	-	-	-	-	3	-	-	
○ 관광지	-	2	-	-	-	-	-	-	-	2	-	-	
○ 춘향테마(유)	-	1	-	-	-	-	-	-	-	1	-	-	
라. 가압펌프장	316	1	-	-	-	-	-	-	316	1	-	-	
○ 관광지	316	1	-	-	-	-	-	-	316	1	-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마. 사 찰	5,762	19	1,152	1,152	-	-	-	-	5,762	19	1,152	1,152	
○ 관광지	5,762	19	1,152	1,152	-	-	-	-	5,762	19	1,152	1,152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바. 동백연죽전수 관(전시)	960	1	288	576	-	-	-	-	960	1	288	576	
○ 관광지	960	1	288	576	-	-	-	-	960	1	288	576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사. 조경휴게지 (1)	40,827	3	17,146	33,868	-	-	-	-	40,827	3	17,146	33,868	
○ 관광지	40,827	3	17,146	33,868	-	-	-	-	40,827	3	17,146	33,868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아. 조경휴게지 (2)	7,736	-	-	-	-	-	-	-	7,736	-	-	-	
○ 관광지	7,736	-	-	-	-	-	-	-	7,736	-	-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자. 조경휴게지 (3)	23,778	3	119	119	-	-	-	-	23,778	3	119	119	
○ 관광지	23,778	3	119	119	-	-	-	-	23,778	3	119	119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차. 조경휴게지 (4)	1,035	-	-	-	-	-	-	-	1,035	-	-	-	
○ 관광지	1,035	-	-	-	-	-	-	-	1,035	-	-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카. 조경휴게지 (5)	1,127	-	-	-	-	-	-	-	1,127	-	-	-	
○ 관광지	1,127	-	-	-	-	-	-	-	1,127	-	-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고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토지이용 계획면적	시설수 (동,개소)	건 축 면 적	연면적	
타. 조경휴게지(6)	443	-	-	-	-	-	-	-	443	-	-	-	
관광지	443	-	-	-	-	-	-	-	443	-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파. 조경휴게지(7)	670	1	30	30	-	-	-	-	670	1	30	30	
관광지	-	-	-	-	-	-	-	-	-	-	-	-	
춘향테마(유)	670	1	30	30	-	-	-	-	670	1	30	30	
하. 녹지	715,967	2	90	90	-	-	-	-	715,967	2	90	90	
관광지	291,108	2	90	90	-	-	-	-	291,108	2	90	90	
춘향테마(유)	424,859	-	-	-	-	-	-	-	424,859	-	-	-	
가. 주제다리	-	1	-	-	-	-	-	-	-	1	-	-	
관광지	-	1	-	-	-	-	-	-	-	1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나. 범선	-	2	-	-	-	-	-	-	-	2	-	-	
관광지	-	2	-	-	-	-	-	-	-	2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다. 승월교	-	1	-	-	-	-	-	-	-	1	-	-	
관광지	-	1	-	-	-	-	-	-	-	1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라. 고갯길 체험장	-	1	-	-	-	-	-	-	-	1	-	-	
관광지	-	1	-	-	-	-	-	-	-	1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마. 랜드마크	-	1	-	-	-	-	-	-	-	1	-	-	
관광지	-	1	-	-	-	-	-	-	-	1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바. 수림터널/ 전통담장체험장	-	1	-	-	-	-	-	-	-	1	-	-	
관광지	-	1	-	-	-	-	-	-	-	1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사. 승월대	1,696	-	-	-	-	-	-	-	1,696	-	-	-	
관광지	1,696	-	-	-	-	-	-	-	1,696	-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야. 인공폭포	390	-	-	-	-	-	-	-	390	-	-	-	
관광지	390	-	-	-	-	-	-	-	390	-	-	-	
춘향테마(유)	-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7 - 41호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신파·요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4. 06.

남 원 시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신파·요천지구
3. 사업위치 :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594-1번지 일원  
남원시 식정동 1-2, 이백면 남계리 343-1번지 일원
4. 사 업 량 : 650필지, 303천㎡
5. 대행업무
  -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일필지 조사
  -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

남원시 공고 제 2017 -533 호

**고평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고평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편입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 월 7 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고평소하천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남 원 시 장
3. 사 업 기 간 : 2017. 4 월 - 2019. 12 월
4. 보 상 대 상 : 아래 하천정비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권리일체

구분	공 사 명	사 업 량	사업의 위치	편입토지	비고
소하천	고평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정비 L=2.3km	수지면 호곡리 ~고평리	남원시 건설과 비치하여 별도 보임으로 같음	

※ 금회 누락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예정이며,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편입면적 최종 확정됨

**5. 열람 및 이의 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7. 04. 07 ~ 2017. 04.21.까지(15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남원시청 건설과 하천담당(☎063-620-6550,6545)
- 다. 열람내용 : 편입토지조서(열람장소 비치)
- 라. 이의신청 방법 :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남원시 건설과에 비치)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5월중 개별통지예정)****7. 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나.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규정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 추천서 양식]**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가업자
			주 소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체 추천 전에 남원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감정평가가 실시 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 업체가 기한 내 추천될 경우 추가로 감정평가 시행하여 보상금 산정 예정임

8.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보상액산정 →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수용재결 →보상금공탁

#### 9. 보상금 지급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협의기간, 장소,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후 보상실시

- 토 지: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남원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등)는 해지한 후 계약체결

10.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11. 기타사항 :

- 토지조서 및 지장물건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에 위반한 지장물건으로 확인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주소변동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로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공고 송달을 대신합니다.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우리시 건설과 하천담당에 오셔서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시면 토지조서 대로 보상대상자를 확정하고 손실보상 할 계획입니다 .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063-620-6550,6545 FAX 063-620-6717) 건설과 하천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17-542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남 원 시 장

### □ 공인 신조 등록 [경제과 외 4개 부서]

1. 공인 등록사유 : 자연마모에 따른 공인 재등록
2. 공인 등록일 : 2017. 4. 6.
3. 관련 조 레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원시농공지 구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전라북도남원 시채권관리인	2.0cm×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경제과
등록	남 원 시 산 립 과 일 상 경 비 인 출 납 원 인	1.8cm×1.8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산림과
등록	남 원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인	1.8cm×1.8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농업 기술센터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원시 주천면 장민원실전용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주천면
등록	남원시 덕과면 장인	2.0cm×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수우인		덕과면

□ 공인 폐기 [경제과 외 4개 부서]

1. 공인 폐기사유 : 자연마모에 따른 공인 폐기
2. 공인 폐기일 : 2017. 4. 6.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남원시농공지 구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전라북도남원 시채권관리인	2.0cm×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경제과
폐기	남원시 산림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1.8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산림과
폐기	남원시농 업기술센 터재무관인	1.8cm×1.8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농업 기술센터
폐기	남원시 주천면 장민원실전용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주천면
폐기	남원시 덕과면 장인	2.0cm×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수우인		덕과면

## 남원시 공고 제2017 - 565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5일을 추가하여 장기재직휴가가 실질적인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에 활용되도록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일수 추가 (안 제23조제13항)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28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행정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word99@korea.kr](mailto:sword99@korea.kr)), 전화(063-620-6064),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3.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 1. 개정이유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5일을 추가하여 장기 재직휴가가 실질적인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에 활용되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특별휴가 일수 추가 (안 제23조제13항)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추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7. 4. . ~ 2017. 4. .
  - 결 과 :
-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진행중

전라북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재직  
한 공무원에게는 5일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p> <p>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 4. (생략)</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p> <p>⑬ ----- ----- -----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5일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p> <p>1. ~ 4.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 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b>남원시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17 - 568호

##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6-2 1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300-16	이*선	2016-건축과- 신축신고-391	59	4	239	남 원 시 운 봉 읍 주 촌 리 300-8	남 원 시 운 봉 읍 주 촌 리 300-16	도 로 지 변 및 면 적 변 경